

특수건물 화재보험요율 적용방법

윤 동 혁
〈본 협회 보험 2부 차장〉

예 8. 호텔(공중위생법(구 숙박업법)에 규정한 호
텔로 사용하는 건물)

소재지: 대전시 중구 중동 100
건물구조: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10층
보험가입금액: 1,500,000,000 원

적용
요건 { 물 건: 일반물건
등 지: 1 등지
건물급수: 1 급
기본요율: 0.105%
합증요율(호텔): 0.055%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$$\begin{matrix} 0.105\% \\ \text{(기본요율)} \end{matrix} + \begin{matrix} 0.055\% \\ \text{(호텔합증)} \end{matrix} = \begin{matrix} 0.16\% \\ \text{(적용요율)} \end{matrix}$$

○ 화재보험료:

$$1,500,000,000 \text{ 원} \times 0.16\% \times 90\% \quad \text{(특수건물할인 10\%)}$$

$$= 2,160,000 \text{ 원} \dots\dots\dots (1)$$

○ 신체보험료: 화재보험료의 14%

$$2,160,000 \text{ 원} \times 14\% = 302,400 \text{ 원} \dots\dots\dots (2)$$

○ 총보험료: (1)+(2)

$$2,160,000 \text{ 원} + 302,400 \text{ 원} = 2,462,400 \text{ 원}$$

예 9. 사설강습소(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
규정한 사설강습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
330㎡ 이상인 건물)

소재지: 서울시 종로구 종로 2 가 10
건물구조: 세멘 벽돌조 2층
보험가입금액: 120,000,000 원

적용
요건 { 물 건: 일반물건
등 지: 2 등지
건물급수: 3 급
기본요율: 0.351%
합증요율: 없음

계산

○ 화재보험료:

$$120,000,000 \text{ 원} \times 0.351\% \times 70\% \quad \text{(특수건물할인 30\%)}$$

$$= 294,840 \text{ 원} \dots\dots\dots (1)$$

○ 신체보험료: 화재보험료의 10%

$$294,840 \text{ 원} \times 10\% = 29,484 \text{ 원} \dots\dots\dots (2)$$

○ 총보험료: (1)+(2)

$$294,840 \text{ 원} + 29,484 \text{ 원} = 324,324 \text{ 원}$$

예 10. 요리점, 무도장, 카바레(식품위생법 시행령
제 9 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한 유흥음식점으로
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30㎡ 이상인 건물) 이 때

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경우 그 연면적은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.)

소재지 :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20
 건물구조 : 세멘벽돌조 3층
 보험가입금액 : 300,000,000원

적용요건
 물건 : 일반물건
 등지 : 3등지
 기본요율 : 0.429%
 할증요율 :
 - 무도유·홍음·음식점 : 0.284%
 (카바레, 나이트클럽, 디스코 및 코요클럽 등)
 - 음식점 : 0.142%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$$\begin{matrix} 0.429\% \\ \text{(기본요율)} \end{matrix} + \begin{matrix} 0.284\% \\ \text{(무도유·홍음·음식점할증)} \end{matrix} = \begin{matrix} 0.713\% \\ \text{(적용요율)} \end{matrix}$$

○ 화재보험료 :

$$300,000,000\text{원} \times 0.713\% = 2,139,000\text{원} \dots (1)$$

(요리점, 무도장, 카바레는 특수건물할인 없음)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료의 14%

$$2,139,000\text{원} \times 14\% = 299,460\text{원} \dots (2)$$

○ 총보험료 :

$$2,139,000\text{원} + 299,460\text{원} = 2,438,460\text{원}$$

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경우

1) 방화구획이 없는 경우(카바레와 음식점)

3층	카바레	1억
2층	카바레	1억
1층	음식점(300㎡)	1억

계산

○ 상기와 동일함(총보험료 : 2,438,460원)

주1) 1층 음식점인 경우 할증요율은 0.142% (3등지 3급)가 되나 2, 3층에 카바레가 있으므로 전체적용요율은 0.713%가 된다.

주2) 1층 음식점 부분의 면적이 130㎡이고 2, 3층 카바레부분의 면적이 260㎡인 경우, 총면적이 390㎡이므로 특수건물이 되며 할증요율도 그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.

2) 방화구획이 있는 경우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— 카바레 —

$$\begin{matrix} 0.429\% \\ \text{(기본요율)} \end{matrix} + \begin{matrix} 0.284\% \\ \text{(무도유·홍음·음식점할증)} \end{matrix} = \begin{matrix} 0.713\% \\ \text{(적용요율)} \end{matrix}$$

— 음식점 —

$$\begin{matrix} 0.429\% \\ \text{(기본요율)} \end{matrix} + \begin{matrix} 0.142\% \\ \text{(음식점할증)} \end{matrix} = \begin{matrix} 0.571\% \\ \text{(적용요율)} \end{matrix}$$

○ 화재보험료 :

$$1) 200,000,000\text{원} \times 0.713\% = 1,426,000\text{원} \dots (1)$$

(카바레)

$$2) 100,000,000\text{원} \times 0.571\% = 571,000\text{원} \dots (2)$$

(음식점)

$$(1) + (2) = 1,997,000\text{원} \dots (3)$$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료의 14%

$$1,997,000\text{원} \times 14\% = 279,580\text{원} \dots (4)$$

○ 총보험료 (3)+(4)

$$1,997,000\text{원} + 279,580\text{원} = 2,276,580\text{원}$$

예 11. 시장(도·소매 진흥업법 구 시장법에 규정된 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)

소재지 :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가 10
 건물구조 : 세멘 벽돌조 2층
 보험가입금액 : 150,000,000원

적용요건
 물건 : 일반물건
 등지 : 2등지
 기본요율 : 0.351%
 시장할증 : 0.568%
(중앙난방시설이 있는 경우)

○ 적용요율 산출

$$\begin{matrix} 0.351\% \\ \text{(기본요율)} \end{matrix} + \begin{matrix} 0.568\% \\ \text{(시장할증)} \end{matrix} = \begin{matrix} 0.919\% \\ \text{(적용요율)} \end{matrix}$$

○ 화재보험료 :

$$150,000,000\text{원} \times 0.919\% \times 90\%$$

(특수건물할인 10%)

$$= 1,240,650 \dots (1)$$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료의 14%

$$1,240,650\text{원} \times 14\% = 173,691\text{원} \dots (2)$$

○ 총보험료 : (1)+(2)

$$1,240,650\text{원} + 173,691\text{원} = 1,414,341\text{원} \text{ (㉞)}$$

— 다음호에 계속 —